

『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8년 8월 14일

나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27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9월 4일

제225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김 홍 태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보장, 청년정책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 권익증진과 청년행복도시 구성에 기여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용어 정의(안 제2조)
 - 청년, 청년정책, 청년지원, 청년단체, 청년시설 용어 정의
-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, 청년 실태조사
(안 제5조~제7조)

-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(안 제8조~제16조)
- 청년의 권익증진(안 제17조~제24조)
 - 참여확대, 능력개발,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, 생활 및 주거안정, 문화예술 활성화, 권리보호, 미취업자 지원대책 수립 등
- 청년단체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(안 제25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,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총무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중 우

○ 본 「구미시 청년 기본 조례안」 은

-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·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구미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
-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